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 단축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20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 단축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해철의원 등 16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6.
3. 회부연월일 : 2025.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 단축 등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해당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 -----2년-----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현 행	개 정 안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존의 지방공기업 임원들 간의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의견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 임원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임기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종속되도록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등의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잦은 경영단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임원 전문성 및 자율경영 보장을 위한 기존 법률의 입법취지와 선거 이후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 논의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국가 공공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건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33

1) 2014년~2025년 단체장 중도교체 현황: 민선 6기 12건, 민선 7기 12건, 민선 8기 8건
1년 이상 단체장 께위 사례: 대구시장 14개월('25.4.~'26.6.), 경남도지사 14개월('17.4.~'18.6.)